보건복지부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가-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의료기관 인증기준 유예 종료 안내
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-302호('19.1.1.시행), 2020-332호('21.1.1.시행), 제2022-10호('22.1.17.시행) 관련입니다.

2. 우리부는 가-25 감염예방관리료의 3등급 기준 신설('19)이후 의료기관 평가인증 준비기간,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관련 고시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기준 요건을 3차례에 걸쳐 유예한 바 있습니다.

3. 위와 관련하여 가-25 감염예방관리료 3등급 급여 기준 중 의료기관 인증기준 적용 유예가 종료('22.12.31.)됨을 안내하오니 현장에서 감염예방관리료 산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병원 등 유관기관에 안내하여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보 건 복 지 부 장 관

수신자 사단법인 대한병원협회,대한의사협회,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,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의료기관정책과장

주무관 김원희 행정사무관 박소영 보험급여과장 전결 12/04 정성훈

협조자

시행 보험급여과-5974 2022.12.04. 접수 2022.12.05.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4층 보험급여과 / bliss0710@korea.kr

전화 044-202-2736 전송 044-202-3934 / bliss0710@korea.kr / 공개